

2.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개별적으로 제출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3.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⑦ 환경부장관은 기존살생물질의 시험 자료의 일부를 생산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⑧ 자료의 공동제출 및 개별제출확인의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살생물질의 목록 공개) 환경부장관은 살생물질의 승인, 승인갱신, 승인변경, 승인취소를 결정한 때에는 해당 살생물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살생물질의 명칭·고유번호
2. 살생물질의 사용이 가능한 살생물제품류 및 살생물처리제품 범위
3. 살생물질의 승인 여부, 내용 및 기간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한 사항

제23조(대체후보 살생물질의 지정) 환경부장관은 살생물질의 승인, 승인갱신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살생물질로 대체되어야 할 대체후보 살생물질(이하 “대체후보살생물질”이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2항을 입증한 살생물질인 경우
2. 호흡기 과민성 살생물질인 경우

3. 일일섭취허용량, 급성독성참고치 또는 허용 가능한 작업자 노출 기준값이 다른 살생물질보다 훨씬 낮은 경우
4. 잔류성, 생물농축성, 독성 중에서 어느 두 가지에 동시에 해당하는 살생물질인 경우
5. 매우 엄격한 위해 관리 대책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나 동물의 건강 및 환경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살생물질인 경우
6. 비활성 이성질체 또는 불순물을 상당히 포함하는 살생물질인 경우

## 제2절 살생물제품의 허가 등

제24조(살생물제품의 허가) ① 누구든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살생물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살생물제품을 제조,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시키는 자는 살생물제품에 사용한 살생물질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이거나 제38조에 따른 정보이용동의서(이하 “정보이용동의서”라 한다)를 소유한 자이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질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과학적 실험·분석 또는 연구를 위해 살생물제품을 제조, 수입 또는 사용하는 경우

2. 판매 또는 유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살생물제품의 시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3.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5조(살생물제품의 허가기준) ① 살생물제품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살생물제품 내 살생물질이 제15조제6항 또는 제16조제5항에 따라 승인 또는 승인갱신을 받은 사항을 준수하거나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살생물질에 해당할 것

2. 살생물제품의 효과·효능이 충분할 것

3. 살생물제품이 표적 생물체에 내성이나 불필요한 고통을 유발하지 않을 것

4. 살생물제품 또는 그 잔류물이 직접적 또는 식수, 공기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사람 및 동물의 건강 또는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5. 살생물제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이 사용 또는 운송에 적합할 것

6. 살생물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제조·수입시설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을 준수할 것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기준을 적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1. 살생물제품이 사용될 수 있는 최악의 노출 시나리오

2. 살생물제품이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되는 방법
3. 살생물제품의 사용과 폐기에 따른 부정적 영향
4.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질이 다른 살생물질 또는 화학물질과 연계되어 나타나는 누적 또는 상승효과

③ 환경부장관은 살생물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자의 범위를 제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사람 또는 동물에게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 또는 내분비계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2. 사람 또는 동식물의 체내에 축적되고 환경 중에 잔류하며 독성이 있는 경우 또는 그러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사람 또는 동식물의 체내에 축적성이 높고, 환경 중에 장기간 잔류하는 경우 또는 그러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사람 또는 동물에게 발육신경 및 면역능력에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동등한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심각한 위험을 줄 수 있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살생물제품을 허가하지 않을 때의 부정적 영향이 살생물제품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보다 크다는 것을 살생물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해당 살생물제품을 허가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대체후보 살생물질을 함유한 살생물제품이 대체후

보 살생물질을 함유하지 않은 살생물제품과 비교하여 유사한 효과·효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동물의 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현저히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살생물제품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살생물제품에 대하여 제27조, 제28조 또는 제29조에 따라 허가 또는 허가갱신을 하는 때에는 10년 이내의 허가 유효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후보 살생물질로 지정된 살생물질을 함유한 살생물제품의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한다.

제26조(살생물제품의 허가 신청 등) ① 살생물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시키려는 자는(이하 “허가 신청자”라 한다)는 해당 살생물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초자료

가. 살생물제품의 제품명 등 일반정보

나. 허가 신청자의 이름 및 주소

다. 살생물제품 내 살생물질과 미살생물질의 모든 성분, 농도 및 비율

라. 살생물제품의 제조·수입시설이 시설기준을 준수함을 입증하는 자료

마. 살생물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질을 공급하는 자의 이름 및 주소

2. 살생물제품 내 모든 살생물질에 대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때 제출한 평가자료 또는 정보이용동의서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살생물제품에 대한 평가자료

가. 물리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

나. 물리적 위험(살생물질이 미생물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다. 검출·확인방법 또는 동정방법

라. 표적 생물체에 대한 효과·효능

마. 사용 목적 및 노출

바. 인체 및 동물에 대한 독성

사. 생태독성, 환경거동 및 동태

아. 인간, 동물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자. 살생물제품의 표시 및 포장

차. 요약 및 평가 정보

4. 살생물제품이 제25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는 자료

5.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일부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련 사항은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살생물제품의 사용을 고려할 때에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노출이 특정 경로로 제한되는 경우

2.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과학적·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을 위하여 자료를 제출한 경우

③ 허가 신청자는 살생물제품 내에 나노물질이 포함된 경우 나노물질이 사람과 동물의 건강,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자료의 내용·작성방법 등의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7조(살생물제품의 평가절차 및 방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26조제1항에 따라 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허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받은 자료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등을 확인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신청자에게 허가에 대한 평가개시 여부를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허가 신청한 자료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다고 제1항에 따라 통지한 때에는 통지를 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살생물제품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신청자가 살생물질의 승인과 살생물제품의 허가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에 환경부장관은 27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신청자에게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 자료

제출에 필요한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평가보고서 작성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허가 신청자에게 열람하게 하고, 30일 이내에 허가 신청자가 평가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 신청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견 제출기한의 연장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의견 제출일(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제출 종료일을 말한다)로부터 30일 이내에 평가보고서 작성을 완료하고, 생활화학제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실을 허가 신청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살생물제품을 허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허가 신청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 살생물제품의 제품명
2. 허가 신청자의 이름 및 주소
3. 허가일 및 종료일



4. 살생물제품의 허가번호
5. 살생물제품류 및 관련된 설명
6. 살생물질과 비살생물질의 모든 성분, 농도 및 비율
7. 살생물제품 제조 또는 수입자의 이름 및 주소
8. 살생물질 제조 또는 수입자의 이름 및 주소
9. 살생물제품의 배합 형태
10. 위험 및 예방 문구
11. 제품 형태와 허가된 사용방법
12. 표적 유해생물
13. 사용량 및 사용방법
14. 사용자 범위
15. 가능한 직접적, 간접적 악영향에 대한 상세한 내용 및 응급처리 방법
16. 안전한 포장 및 폐기방법
17. 살생물제품의 저장 조건 및 유통기한
18. 살생물제품의 제조·수입시설의 시설기준
19. 기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정보

⑦ 제5항에 따라 살생물제품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환경부장관은 그 사실과 이유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살생물제품의 허가 갱신 등) ① 살생물제품의 허가를 갱신하려

는 자(이하 “허가갱신 신청자”라 한다)는 제27조제6항에 따른 허가가 종료되는 날로부터 1년 전까지 허가를 받을 당시 제출한 제26조제1항 각 호의 자료에 대한 유효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허가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 갱신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살생물제품의 허가 갱신 평가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갱신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허가 갱신의 평가를 개시하는 경우 90일 이내에 살생물제품에 대한 허가 갱신의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정밀한 평가를 위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환경부장관은 90일 이내에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추가 자료가 필요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갱신 신청자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 자료 제출에 필요한 기간은 제3항에 따른 평가보고서 작성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평가보고서의 결정 및 통지는 제27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허가 신청자”는 “허가갱신 신청자”로, “허가”는 “허가 갱신”으로 본다.

⑥ 허가갱신 신청자는 제5항에 따라 살생물제품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한 통지를 환경부장관으로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살생물제품의 제조·수입·판매를 중단하고, 이미 시장에서 유통 중인 살생물제품은 환경부장관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후에는 더 이상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 폐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허가절차의 간소화) ①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살생물제품이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26조,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1.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모든 살생물질이 위해성이 낮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살생물질인 경우
2. 위해우려물질을 함유하지 않은 경우
3. 살생물제품 내에 나노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경우
4. 살생물제품의 효과·효능이 충분한 경우
5. 살생물제품의 취급 또는 사용에 있어 개인 보호장비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는 해당 살생물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료  
가. 살생물제품의 제품명

나. 허가 신청자의 이름 및 주소

다. 살생물질과 비살생물질의 모든 성분, 농도 및 비율

라.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료

2. 제1항 각 호를 충족하는지를 입증하는 자료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60일 이내에 살생물제품의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해당 살생물제품을 허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허가 신청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 살생물제품의 제품명

2. 허가 신청자의 이름 및 주소

3. 허가일 및 종료일

4. 살생물제품의 허가번호

5. 특정제한 사항

6. 기타 환경부장관이 살생물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살생물제품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된 때에는 그 사실과 이유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신청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유사살생물제품의 허가) ① 제26조, 제28조 또는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제27조제6항, 제28조제5항 또는 제29조제4항에 따라 환경

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살생물제품(이하 “기준제품”이라 한다)과 비교하여 동일한 살생물질을 사용하고 용도와 조성, 위해성과 효능·효과가 유사한 살생물제품(이하 “유사살생물제품”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유사살생물제품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사살생물제품의 효과·효능
2. 제27조제6항, 제28조제5항 또는 제29조제4항에 따라 이미 허가받은 살생물제품의 허가번호 및 정보이용동의서
3. 이미 허가받은 살생물제품과 유사살생물제품 간의 유사성을 입증하는 자료
4. 유사살생물제품만의 고유 특성 및 이미 허가받은 살생물제품과의 차이점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유사살생물제품의 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허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생활화학제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어 9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곤란한 때에는 6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유사살생물제품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자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 자료 제출에 필요한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유사살생물제품을 허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 유사살생물제품의 제품명
2. 유사살생물제품의 허가를 신청한 자의 이름 및 주소
3. 허가일 및 종료일
4. 유사살생물제품의 허가번호

⑥ 제3항에 따라 유사살생물제품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된 때에는 환경부장관은 그 사실과 이유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신청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⑦ 유사살생물제품의 허가 유효 기간은 기준제품의 허가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⑧ 기준제품의 허가 변경 및 취소는 유사살생물제품의 허가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기준제품의 허가 변경 및 취소가 유사살생물제품의 허가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살생물제품의 허가 여부에 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평가를 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정한 사항 이외에 유사살생물제품의 허가  
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허가의 변경) ① 살생물제품 허가 또는 허가갱신을 받은 자가  
이름 및 주소, 제품명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환  
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을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제32조(허가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살생물제품의 허가 또는 변  
경허가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살생물제품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살생물제품  
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해당 살생물제품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살생물제품의 허가 사항  
을 취소하거나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사용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1. 사람, 동물 또는 환경에 해(害)가 있는 것으로 새로이 밝혀진 경  
우
2. 국제기구, 외국정부 등에 의하여 해당 살생물제품 또는 제품에

함유된 살생물질이 사람, 동물 또는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제33조(살생물제품의 표시 등) 살생물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시키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겉면에 한글로 표시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사용설명서를 살생물제품에 포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1. 살생물제품에 사용된 모든 살생물질 명칭 및 농도
2. 살생물제품의 허가번호
3. 살생물제품의 허가를 받은 자의 이름과 주소
4. 살생물제품의 사용량, 사용방법과 사용의 제한범위
5. 살생물제품의 사용에 따른 부작용 및 응급처치 방법
6. 살생물제품의 안전한 폐기방법 및 유통기한
7. 살생물제품에 나노물질이 포함된 경우, 해당 물질의 명칭과 그 앞에 괄호로 “나노”라는 문구
8. 기타 환경부장관이 살생물제품의 안전한 사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 사항

### 제3절 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관리 등

제34조(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기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



을 충족하지 아니한 살생물처리제품은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할 수 없다.

1. 살생물처리제품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살생물제품만을 사용할 것
2. 살생물질의 승인 사항과 살생물제품의 허가 사항을 준수할 것
3. 제35조에 따른 표시기준을 준수할 것

제35조(살생물처리제품의 표시기준) ①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시키려는 자 중에서 유해생물의 제거 등의 효과·효능이 있다는 사실을 포장에 표시하는 등 구매자에게 알리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살생물처리제품 겉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잘 보이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1. 살생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2. 살생물처리제품에 포함된 모든 살생물질의 명칭
3. 살생물질별 기능
4.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한 살생물제품에 나노물질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물질 명칭과 그 앞에 괄호로 “나노”라는 문구
5. 살생물질로 인한 위험 및 예방 문구

② 제1항에 따른 표시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위치에 한글로 기재되어야 하며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36조(살생물처리제품의 정보제공) ① 살생물처리제품을 구매한 자는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질에 대한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을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청구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자는 기업 비밀 등을 이유로 정보 제공 또는 열람이 거부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에게 정보 제공을 하도록 하거나 열람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거나 열람한 자는 그 정보를 해당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정보 제공 또는 열람 청구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4절 자료의 보호와 공유

제37조(자료의 보호) ① 환경부장관은 살생물질의 승인, 승인갱신, 변경승인 또는 살생물제품의 허가, 허가갱신, 변경허가 과정에서 제출

된 자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살생물질의 명칭, 신청자의 이름과 연락처
2. 살생물제품의 제품명, 신청자의 이름과 연락처
3. 기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보호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살생물질의 경우 : 최초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0년
2. 기존살생물질을 제외한 살생물질의 경우 : 최초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5년
3. 살생물제품의 경우 : 최초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5년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화학제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2. 공개할 경우 기업의 기업비밀과 관련하여 현저한 영향을 초래할 경우

제38조(정보이용동의서) ① 환경부장관은 살생물질 승인, 승인갱신 또는 살생물제품의 허가, 허가갱신을 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 승인갱신 또는 허가, 허가갱신을 받은 자(이하 “자료 소유자”라 한다)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살생물질 또는 살생물질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 중에서 자료 소유자가 승인, 승인갱신 또는 허가, 허가갱신을 위해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자료를 이용하려는 자(이하 “자료 이용자”라 한다)는 자료 소유자와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이용동의서를 작성하고 해당 정보이용동의서의 사본을 환경부장관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척추동물 시험자료의 공유) ① 살생물질의 승인 또는 살생물질제품 허가 신청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료제출자”라 한다)는 척추동물을 이용하여 실시한 시험결과를 기록한 시험자료(이하 이 조에서 “척추동물시험자료”라 한다)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때 환경부장관은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소유자(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라 한다)의 이름 및 연락처를 지체없이 자료제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척추동물시험자료가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는 자료제출자는 동물시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 해당 척추동물시험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척추동물시험자료가 자료로 제출된 지 15년이 지난 경우에는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활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소유자가 사용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자료제출자는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고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해당 척추동물시험자료 없이는 살생물질의 승인여부 또는 살생물제품의 허가 여부 등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등 척추동물시험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제출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자료를 생산하여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동의를 요청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동의 및 적절한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4장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유통 관리

제40조(광고의 제한) ① 적합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의 광고는 사람과 동물의 건강,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무독성’, ‘무해한’, ‘안전한’, ‘환경친화적’, ‘동물친화적’, ‘선진국에서 안전성을 인정한’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광고 문구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적합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의 광고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하십시오. 사용 전 항상 포

장 표시사항과 제품 정보를 읽으십시오.”라는 문구를 포함하고 전체 광고에서 명확하게 식별 및 판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이 아닌 제품에는 살생물제를 연상시키는 광고 문구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안전용기·포장 등) ① 적합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해당 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의 오용·남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어린이의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안전용기·포장의 기준 등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판매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조에 따른 안전기준·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제11조에 따라 취소·금지된 적합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환경부장관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지 않은 살생물질 또는 살생물제품, 제34조를 위반한 살생물처리제품을 판매·증여하거나 판매·증여의 목적으로 수입·진열·보관·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중개 및 구매·수입대행의 금지) 적합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의 판매중개업자 및 구매·수입대행업자는 제8조에 따른 안전기준·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취소·금지된 적합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살생물제품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살생물처리제품의 판매를 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

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위반 적합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을 즉시 삭제하고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4조(안전성 조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시중에 유통되는 적합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위해성을 확인하거나 제8조에 따른 안전기준·표시기준, 제15조제6항에 따른 승인사항, 제27조제6항에 따른 허가사항, 제34조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하는 안전성 조사(이하 “안전성 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안전성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조사내용과 결과를 보관하여야 하고, 해당 적합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이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안전성 조사의 방법·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내용과 결과의 보관·열람 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회수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은 안전성 조사, 행정 조치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생활화학제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적합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의 회수, 판매금지, 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안전기준·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1조에 따른 취소·금지된 적합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사람과 동물의 건강, 환경에 미치는 해(害)가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살생물질의 승인 또는 살생물제품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승인 또는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살생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사용한 경우
  4. 제16조제6항과 제28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승인 갱신 또는 허가 갱신이 되지 않은 살생물질과 살생물제품이 사람과 동물의 건강, 환경에 미치는 해(害)가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되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5. 제34조를 위반한 살생물처리제품이 사람과 동물의 건강, 환경에 미치는 해(害)가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6. 제46조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적합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질,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이 사람과 동물의 건강, 환경에 미치는 해(害)가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되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7.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② 환경부장관은 적합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해당 적합확



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를 제조, 수입, 판매 및 유통하는 자 등에게 명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회수 또는 폐기 등의 명령이 불이행되는 경우 해당하는 적합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를 직접 회수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수 또는 폐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제조, 수입, 판매 및 유통하는 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46조(부작용 등에 대한 보고) ① 적합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자·수입자 및 살생물질의 승인 또는 살생물제품의 허가를 받은 자,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적합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질,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이 사람이나 동물의 건강,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는 정보를 새로이 알게 된 때
2. 해당 살생물질이 표적 생물체에 받아들일 수 없는 영향이 있다는 시험자료가 생산되었거나 정보를 새로이 알게 된 때
3. 해당 살생물제품이 표적 생물체에 충분히 효과적이지 않다는 새로운 시험자료가 생산되거나 정보를 알게 된 때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한 자는 판매한 적합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질,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을 구매한 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